

##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

의안  
번호

제출연월일 : 2001. 9. .  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청소년 시책에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청소년 시책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함.
-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법적 보장을 확보코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목 적 : 청소년으로 구성된 차세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기 능 : 청소년관련 정책 자문 및 업무 협조(안 제3조)
- 구 성 : 중·고·대학생으로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(안 제4조)
- 위촉자격: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소년(안 제5조)
- 임 기 : 1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6조)
- 위원장의 직무 : 위원회의 대표, 위원회의 업무 통괄(안 제7조)
- 회 의 : 분기별1회 원칙, 시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시(안 제8조)
- 수당 등 : 조례에 의거 수당·여비등 필요 경비지급(안 제9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수요자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이천시차세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”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.

**제3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 및 시의 다른 기관·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
2. 경기도 및 타 시·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
3. 시의 청소년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**제4조 (구성)** ①위원회는 중·고·대학생으로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남·여 각 1인으로 한다.

**제5조 (위촉자격등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재학중인 학생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2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**제6조 (임기)**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7조 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8조 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도 소집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 (수당등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실·과·소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서 광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담당 박 회 자
	담 당 자	업 기 화
	성명·전화	644-2264